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안전센터 구조기능 강화를 위해 펌프차구조대 교육훈련 이수시간
상향(특별구조훈련 연 40시간 이수)하여 신속한 구조대응과 전문성을
강화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자격자 부족으로 자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연도까지
특별구조훈련 이수 강화와 기록관리 기준 마련(안 제9조제1호)
- 나. 자격이 없는 신규대원 훈련방법과 세부기준을 정함(안 제9조제2호)